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91
----------	-----

제출연월일 : 2008. 1. 11.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위원을 축소하고 위촉위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 나.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위원을 축소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3) 입법예고 : 2007. 11. 23. ~ 12. 13.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을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로 하고,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중 “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①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기획관리실장, 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③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3.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장애인복지 담당과장”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으로, “담당사무관”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3. (생략)</p> <p>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p> <p>③당연직위원은 행정부시장, 기획관리실장, 경제통상국장,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국장, 복지여성국장,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중 2분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p> <p>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p> <p>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3. 시 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p> <p>제4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p> <p>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생략)</p> <p>②위원회의 간사는 장애인복지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p>	<p>제1조(목적) -----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p> <p>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3조(구성) ①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②기획관리실장, 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p> <p>③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1. 대전광역시의회의원</p> <p>2.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p> <p>3.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제9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노인장애인복지과장-----</p> <p>-----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사무관 -----</p>

관련 법규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장애 인 복 지 법	<p>제11조의2(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5]</p>	<p><전부개정 2007. 4. 11></p> <p>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p> <p>②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장애 인 복 지 법 시 행 령	<p>제9조의3(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p> <p>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당해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본조신설 2004.9.6]</p>	<p><전부개정 2007. 10. 15></p> <p>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p> <p>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p>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8. 1. 23

교육사회위원회

I.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1. 11 대전광역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8. 1. 14

다. 상 정 일 자 : 제17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8. 1.23)

상정, 질의, 심사, 원안가결

II.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복지여성국장 신숙응)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위원은 축소하고 위촉위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은 정비함(안 제1조).

나.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위원을 축소함(안 제3조).

III. 검토의견 (전문위원 : 안문환)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위원을 축소한 후 위촉위원을 확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 제1조는 인용법명을 관계 법률과 맞게 정비하고,
- 제3조는 당연직위원을 축소한 후 위촉위원을 확대하였음.
- 제4조는 위촉위원의 임기와 연임에 관한 규정과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음.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위원을 축소한 후 위촉위원을 확대하는 등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시의 적절하다고 사료됨.
- 그러나, 조례안 제3조 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함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IV. 질 의 요 지 : 생 략

V.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V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